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21 (화)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6. 11. 27(월)
다. 상정일자 : 2006. 12. 5(화) 제13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12. 5) 상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환경복지과장 지형근)

가.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기금 운용사항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방법 개정(안 제4조)
 - 주민대표를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한정
 - 군수가 선정한 공무원 2명 삭제
- 기금심의회 간사와 서기를 두어 행정인력 보강(안 12조제1항)
-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항목 삭제(안 제13조 및 제14조)
 - 주민지원사업계획서와 중복 및 법령근거 없음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함경호)

가.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기금 운용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내용을 보면

- 법제처의 조례 제명 띄어쓰기 권장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고,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원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별표2)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에 따라 개정하였고,
- 기금심의회 간사와 서기를 두어 행정인력을 보강하였으며,
- 법령근거에 없고, 주민지원사업계획서와 중복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항목을 삭제하는 것임.

다. 검토결과

- 상위법의 개정에 맞게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불임】 :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 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
------	----

제출년월일 : 2006. 11. 4.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기금운용사항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방법 개정(안 제4조)

- (1) 주민대표를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한정
- (2) 군수가 선정한 공무원 2명 삭제

나. 기금심의회 간사와 서기를 두어 행정인력 보강(안 12조제1항)

다.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항목 삭제(안 제13조 및 제14조)
- 주민지원사업계획서와 중복 및 법령근거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별첨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다. 입법예고 : 2006. 9. 22 ~ 10. 12 실시결과 의견 없음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중 “법 제9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중 “영 제6조제3호”를 “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또는 인접지역 군의원으로 의회에서 선정한 의원 1명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12명

제7조중 “군수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7월말까지 제출”을 “군수에게 제출”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중 “매립장운영팀장”을 “매립장운영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당당자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u>법 제97조제1항</u>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p> <p>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 시설의 규모) <u>영 제6조제3호</u>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및 1일 소각능력 10톤이상인 소각시설을 말한다.</p> <p>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해당지역 군의원</u> <u>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거주하는 읍면의 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11명</u> <u>(생략)</u> <u>군수가 선정한 공무원 2명</u> 	<p><u>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 ----- <u>법 제17조제1항</u>----- ----- ----- ----- ----- ----- -----.</p> <p>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 시설의 규모) <u>법 제9조제1항</u>----- ----- ----- ----- -----.</p> <p>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 ----- ----- ----- 1. <u>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또는 인접지역 군의원으로 의회에서 선정한 의원 1명</u> 2. <u>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매립 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12명</u> 3. <u>(현행과 같음)</u> <u><삭제></u></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지원협의체에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7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1.~3. (생략)</p>	<p>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 ----- ----- ----- <u>군수에게 제출</u>하여야 한다.</p> <p>1.~3. (현행과 같음)</p>
<p>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생략) ②군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1. (생략) 2. 기금출납원 : <u>매립장운영팀장</u> ③(생략)</p>	<p>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기금출납원 : <u>매립장운영 업무담당</u> ③(현행과 같음)</p>
<p>제12조(간사 및 수당 등)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p> <p>②(생략)</p>	<p>제12조(간사 및 수당 등)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제13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삭제></p>

현 행	개 정
<p><u>제14조(기금의 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u></p> <p><u>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서류</u></p> <p><u>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재무제표</u></p> <p><u>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증빙서류</u></p> <p><u>4. 기타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u></p>	<p><u><삭제></u></p>

관 계 법령 발췌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2(지원협의체 구성원의 구성기준 및 결격사유) ①지원협의체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
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개정2005.3.31)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말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②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2.9]